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28
----------	------

2025년 6월 1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6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

가. 제안이유

- 홍보관광 유람선인 ‘한강아라호’ 매각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수상이용시설 중 ‘한강아라호’를 삭제하고,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주차수요 대응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 적용에서 제외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상이용시설 선박 중 ‘한강아라호’ 삭제(안 별표 2 제1호)
-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분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 적용 제외(안 별표 2 제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라.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포화 상태인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의 일 주차 요금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려는 것임.

나. 세부 검토 의견

- 여의도 한강공원(한강분류 호안쪽) 내에는 3개¹⁾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 2주차장(주차면수 176대)은 다른 주차장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여의나루역에 인접해 있고 대형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매우 혼잡한 실정임.

2주차장은 통상적으로 오전 8시부터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이는 주변 주차장과는 달리 일 주차 요금제(15천원/일)를 운용함에 따라 일 주차 차량의 비율이 주차면수의 40%(70면/176면)를 차지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음(평균 주차시간: 약 7시간).

일 주차 차량이 많은 이유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 요금에 기인하며, 이용객은 한강공원 이용 시민보다는 주변 직장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 이용 차량 분석 결과('25.4.)>

총출차 차량	회차 차량 (10분 이내)	1시간 미만	1~4시간 미만	4~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주차시간
6,838대	731(10.6%)	923(13.5%)	2,174(31.8%)	701(10.3%)	2,309(33.8%)	<u>6:53:49</u>

1)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현황

구분	위치	주차 면수	면적	비고
여의도 1주차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83-6	800면	21,630㎡	
여의도 2주차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176면	6,630㎡	
여의도 3주차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86-5	862면	17,483㎡	

<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 반경 500m 내 주차장의 요금>

주차장명	10분당 요금	일 주차 요금	비고
여의도 2주차장	300원	15,000원	
노상공영주차장(MBC)	1,000원	-	공휴일·일요일·야간 무료
한전 남서울본부 주차장	1,000원	42,000원	
더현대서울 주차장	2,000원	-	파크원 주차장
LG트윈타워 주차장	1,000원	-	
공영주차장(세우빌딩)	1,000원	-	공휴일·일요일·야간 무료
세우빌딩 주차장	1,000원	144,000원	

- 한강공원 내 주차장은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주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등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이 개장되면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의 혼잡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여의도 2주차장에 대해서는 일 주차 요금제를 폐지하여 장시간 주차에 따른 부담을 높임으로써 혼잡도를 완화하고 한강공원 이용자 중심으로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이견은 없음.

- 다만, 한강공원 내 매점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장시간 주차할 수밖에 없어 주차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선박의 한강아라호란을 삭제하고, 별표 2 제7호 여의도한강공원의 월정기권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월정기권	
여의도샛강쪽(4, 5주차장)	72,000~100,000원
한강분류호안쪽(1, 2, 3주차장)	91,000~120,000원

2)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분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비고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 이상)	3,000~5,000원 5,000~10,000원
		1회 대여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 이상) (4시간 이내, 70명 기준) ※이동 운항 가능	210,000~350,000원 350,000~700,000원
	한강 아라호	1시간 승선(편도)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 이상)	4,000~6,000원 8,000~12,000원
		2시간 승선(왕복)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 이상)	6,000~9,000원 13,000~17,000원
1회 대여·대여료 (4시간 이내)		700,000~3,500,000원	
그 밖의 선박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이상)	1,000~1,500원 2,000~3,000원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별표 2]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제14조 관련)

1. 수상이용시설

구분	기준 및 이용료		비고
선박	한강 르네상스호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 이상)	3,000~5,000원 5,000~10,000원
		1회 대여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 이상) (4시간 이내, 70명 기준) ※이동 운항 가능	210,000~350,000원 350,000~700,000원
	<삭 제>		2. 2시간 초과 승선시에는 매 추가시간마다 1시간 승선료의 50~90%를 추가한다.
그 밖의 선박	1회 승선 • 어린이·청소년(6~18세) • 성인(19세이상)	1,000~1,500원 2,000~3,000원	

7. 공원편의시설(주차장)

구분	기준 및 이용료			월정기권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3,000원	300원 ~ 400원	13,000~19,000원	여의도샐강쪽 72,000~100,000원 한강분류호안쪽 91,000~120,000원
그 밖의 한강공원	최초30분 1,000~1,500원	200원 ~ 300원	9,100~12,000원	45,000~64,000원

비고
1) 이용료 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고
1) 이용료 징수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여의도한강공원 1, 2, 3, 4, 5주차장 중 2주차장(마포대교 남단, 한강분류호안쪽)의 주차요금은 1일 주차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는다.